

<식품위생교육 법령 개정 사항>

○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(2024. 7. 18.)

구 분	현 행	개 선
재창업자 신규교육 폐지	·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내 동일· 유사 업종 창업 시 신규교육 면제	· 신규교육 대신 정기교육 받도록 개선 * 신규교육 면제 기간(2년내) 폐지 =>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1호, 제2호
정기교육 갈음 지역 확대	· 동일 시·군·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다수의 유사 업종 운영 시 정기교육 갈음	· 갈음 지역 범위를 시·도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 =>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제1호, 제2호
제조업· 판매업 등 병행 시 정기교육 갈음	· 제조업자가 판매업 등으로 업종 변경 또는 병행 시 신규교육 1 회만 이수 가능	· 정기교육도 1회만 이수 가능 =>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제3호

(참고)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(2024. 7. 3.) (신설)

구 분	현 행	개 선(신설)
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병행하는 경우 교육 갈음	-	· 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→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갈음 =>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(신설)